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행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

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의 사유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을 60%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,

「알기 쉬운 법령 기준」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